

# 2023 양서초 학교생활인권규정

2021년 09월 30일 개정

2023년 12월 15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양서초등학교 학교생활 인권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양서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를 적용한다.

### 제4조 【정의】

- ① “학생”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 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 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 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 라 한다)를 말한다.

## 제2장 학생생활 규정

### 제1절 교내생활

#### 제5조 【구성원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 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회할 것을 안내한 후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나. 학교 폭력 신고함
  - 다. 학교폭력 문자 신고 #0117
  - 라.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 마.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

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미술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겸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③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두발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16조 【학급 내 당번활동】** 학생의 학급 내 당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비품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④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7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 제2절 교외생활

**제18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 ⑨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정보

**제20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거나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2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3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5조 【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7조 【권리 및 의무】**

- ①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 보장 및 학교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29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학생회 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2인(5학년 1인, 6학년 1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제31조 【직무 및 선출】**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전교어린이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는 학생 10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다.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5절 생활지도 규정

**제32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버스 승차 도우미, 배움터 지킴이 등) 및 학부모가 교통 지도를 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학교안전생활 수칙’을 준수한다.

**제33조 【교외생활 지도】**

- ①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생활교육한다.
- ② 학생지도 권한을 일부 학생 자치기구 등에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거나 지도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34조 【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과제학습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5조 【체벌기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2장(학생인권)제2절(폭력 및 위협으로 부터의 자유)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2항(학교에서의 체벌 금지)에 의거하여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체벌을 금지한다.**

단,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과제학습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지도는 부여할 수 있다.

-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④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이 때도 단계적으로 방법을 적용한다.

(교실상담 및 경고 ⇒ 교실 안 지도(교과담임) ⇒ 교내봉사(담임교사) ⇒ 학부모통보 및 상담(담임교사) ⇒ 교실 밖 상담(학생자치담당교사) ⇒ 학교관리자 상담)

**제36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6절 생활지도 방식

**제37조 【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38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9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

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 1호 지도<br>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br>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 2호 지도<br>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10분 내외로 분리 후 복귀  |   |                       |
| 3호 지도<br>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br>또는<br>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상황에 따른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br>-교장실, 교무실, 연구실, 도서실, 보건실, 상담실 등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br>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br>또는<br>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   |                       |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등교 시 지참할 수 없는 물품
    - 가.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 나. 성냥,ライター,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 다. 도박에 관련된 물건
    - 라.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 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 요건 |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li> </ul>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br>(예시) 흉기,ライター,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li> <li>·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li> </ul>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br>(예시) 술, 담배 등                   |      |                    |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br>(예시) 도색잡지 등                                |      |                    |  |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당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41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 제42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43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4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45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3장 학생생활교육규정

#### 제1절 총칙

**제46조 (목적)** 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의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을 생활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 (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은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생 자치부장을 포함한 교원 약간을 위원으로 하되, 특정학생에 대한 생활교육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9조 (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 다. 학생 간 폭력에 따른 학생의 생활교육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각종 평가 중 부정행위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서 행동교정을 위한 교육 또는 징계를 결정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성적관리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성적 처리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경미한 사안 처분이나 약식으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50조 (생활교육 심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1조 (재심의 부의)**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
- ④ 재심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2조(특별교육의 종류와 기간)** 생활교육처분의 종류에 따른 생활교육의 요건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사회봉사 :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특별교육기간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기간’의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출석정지: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하고 그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연간 30일 이내)

**제41조(생활교육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자치부 및 진로상담부교사,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53조(생활교육 처분시 부과 내용)** 생활교육 처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생활교육 처분 결과 공고를 금지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는 다음과 같으며 학습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다. 교재·교구 정비

라.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학부모에게 협조를 구한다.

**제54조 (생활교육 심의의 확정)** 학생 생활교육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5조 (생활교육내용 통보)** 생활교육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 내용을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6조 (생활교육 집행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생활교육처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생활교육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7조 (생활교육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생활교육 처분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8조 (징계사실의 공표금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 제4장 개정방법

**제59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정한다.
  - 1. 교직원은 교직원 회의, 메신저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2. 학부모는 안내장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3. 학생은 다모임이나 학급 회의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60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학생회장, 남녀부회장, 학부모회장, 부회장, 교감, 교무, 생활인권담당교사)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직으로 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직으로 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1조 (의결방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개정한다.
- 3. 상위법에 의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시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학운위 심의 후 학교장 결재로 개정한다.